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됨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검사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나.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소재지와 검사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청 하도록 함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5)

- 성능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며,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성능검사를 취소·중단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자체검사결과서, 제품사양서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관측 장비 검정 결과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법 제6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센서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4.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 가. 성능검사 접수, 수수료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
 - 나. 성능검사 세부 시험 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다. 성능검사서 발급,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의 성능검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검사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조4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 합산금액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의 진동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치할 것
3.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상시 작동할 것
5. 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 6. 4.부터 시행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장비 구분	검사항목	성능 기준
지진가속도 계측센서	계측 성분	· 3방향 성분(연직 1방향, 수평 2방향) · 2방향 성분 · 1방향 성분
	주파수 영역	· 0.1~50 Hz 범위 · 오차범위 < 3dB
	동적 범위	· 120dB 이상 · 최대 계측 지진가속도 2.0g
	출력전압선형비	· 1% 이내
	성분간 감도오차	· 1% 이내(자유장용) · 2% 이내(시설물용)
	출력전압	· 최대출력전압
	출력 방식	· 차동출력방식 여부
지진가속도 기록계	동적범위	· 120dB 이상
	채널수	· 3채널 이상 · 3채널 이상 추가 확장 가능 여부
	트리거 방법	· STA/LTA 또는 드레스홀드(threshold) 방법 - 드레스홀드(threshold) 방법의 경우 0.005g · 지진가속도기록계에서 트리거(trigger) 수준 변경 및 운영프로그램에서 제어 가능
	자료취득	· 100회/초 이상의 파형 자료
	자료기록 시간	· 트리거 작동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부터 60초 후까지 메모리에 저장 및 별도 저장 장치에 기록
	최대시각오차	· 0.005초 이내 · 외부에서 시각보정 가능

자료 획득 및 전송 방법	• TCP/IP 통신 가능 • 다중 전송 가능
기록 형식 및 저장	• 100회/초 데이터 및 20회/초 분석데이터 (MMA) (자유장용) • 100회/초 데이터(시설물용)
저장 형식	• 범용 자료구조 형식(SEED(Standard for the Exchange of Earthquake Data), mini-SEED, SAC, GCF, SEG-Y, GSMS, CD1.0, CD1.1) • 범용 방식이 아닐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공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1) 가중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인증 업무 발전 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라. 법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이내

신청자	개인	소속	부서명
		이름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핸드폰)	팩스번호
	법인(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팩스번호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연번	제조사	모델명	기기번호	방향수	Sensitivity (V/G)	최대측정값 (G)

지진가속도기록계					
연번	제조사	모델명	기기번호	채널수	물리적변환값 (gal/digit or V/digit)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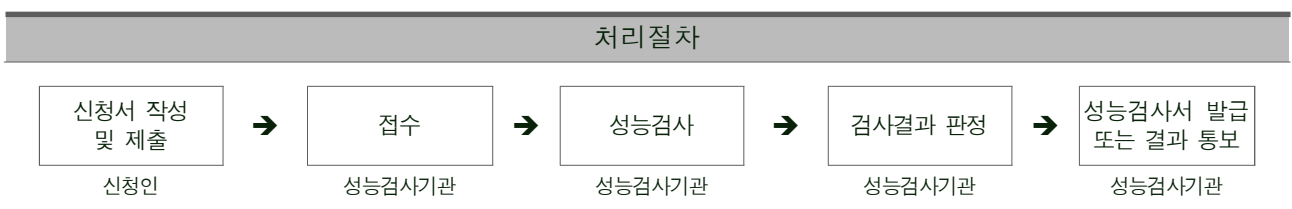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체검사결과서 1부 2. 지진가속도계측기 제품사양서 1부 3. 지진가속도계측기 제품설명서 1부 ※ 성능검사일정에 따라 성능검사장비를 성능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제2조의5에 따른 수수료
------	--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성능검사서

1. 신 청 자

회사명 :

주 소 :

2. 검 사 제 품

제작회사 :

모 델 명 :

기기번호 :

방 향 수 :

3. 검사규격 및 방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4. 검사 결과 : 별첨 “검사결과” 참조

5. 성적서 용도 : 성능검사

6. 접수 일자 : 년 월 일

7. 발급 일자 : 년 월 일

시험자

승인자

○○○팀 홍길동

○○○팀 이순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성능 검사서를 발급합니다.

성능검사기관 장 직인

성능검사기관 :

검사번호 : 제 ○○-○○-○○호

의뢰기관(업체)	검사기간	검사장소	종합판정

기준장비	모델	
	S/N	

검사대상	제조사(국적)	제작년월	모델명	S/N
장비				

구분	항목	세부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비고
지진 가속도 계측 센서	계측성분 ¹⁾	· 3방향 성분(연직 1방향, 수평2방향) · 2방향 성분(시설물용) · 1방향 성분(시설물용)			
	주파수 영역 ²⁾	· 0.1~50 Hz 범위 · 오차범위 < 3dB			
	동적범위 ³⁾	· 센서 잡음레벨 : 120dB 이상 (100샘플/초) (최대 측정범위 2g일 경우 잡음 RMS가 0.002gal 이하)			
	출력전압 선형비 ⁴⁾	·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 선형성 1% 이내 · DC tilting test 오차 < 1%			
	성분간 감도오차 ⁵⁾	· 1% 이내 (자유장용) · 2% 이내 (시설물용)			
	출력전압 ⁶⁾	·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최대 입력 전압이내			
	출력방식 ⁷⁾	· 지진가속도기록계와의 거리가 50m 이상의 경우 차동출력방식 적용 · 차동출력방식(Differential) 여부 측정			

유의사항

- 1) 계측성분 : 3가지 방향 성분 중 해당되는 것 기재
- 2) 주파수 영역 : 진동대 시험을 통해 0.1~50 Hz 주파수 범위의 평활화 여부 기술(3dB이내)
- 3) 동적범위 : 120dB를 넘는 조용한 곳에서 센서를 지진가속도기록계와 연결하여 잡음 수준을 측정하고 그 값을 기록함
예) 111dB 이하시 (지진가속도기록계 연결측정)
- 4) 출력전압선형비 : 1g 가속도 범위 내에서 센서의 기울기에 따른 DC 전압의 이론값과 실제값의 오차 범위 측정
예) DC tilting test 오차 : 1% 정도(1.0g 범위에서 측정), 기울기 각도 : 0, 15, 30, 60, 90도 등
- 5) 성분간 감도오차 : 자유장과 시설물 용도에 따라 항목기준을 다르게 하여 적합여부 판단
- 6) 출력전압 : 센서에 가진하여 최대 출력전압 측정
- 7) 출력방식 : 센서의 감도와 출력전압 측정

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

1. 신 청 자

회사명 :

주 소 :

2. 검 사 제 품

제작회사 :

모 델 명 :

기기번호 :

채 널 수 :

3. 검사규격 및 방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4. 검사 결과 : 별첨 “검사결과” 참조

5. 성적서 용도 : 성능검사

6. 접수 일자 : 년 월 일

7. 발급 일자 : 년 월 일

시험자

승인자

○○○팀 홍길동

○○○팀 이순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
검사서를 발급합니다.

성능검사기관 장 직인

성능검사기관 :

검사번호 : 제 〇〇-〇〇-〇〇호

의뢰기관(업체)		검사기간		검사장소		종합판정	
기준장비		모델					
		S/N					
검사대상 장비		제작사(국적)	제작년월	모델명	S/N		
구분	항목	세부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비고	
지진 가속도 기록계	동적범위 ¹⁾	· 차체 잡음레벨 측정 : 120dB이상(100샘플/초)					
	채널수 ²⁾	· 3채널이상 및 채널확장여부					
	트리거 방법	· STA/LTA 또는 드레스홀드(5 gal) · 트리거 수준 변경여부(운영 프로그램에서)					
	자료취득	· 100회/초 이상 파형연속기록 · 매초마다 최대값 산출(MMA)					
	자료기록 시간 ³⁾	· 트리거 기준 30초전 60초 후 까지 저장					
	최대시간 오차 ⁴⁾	· 0.005초 이내 · 외부 시각 보정 가능 · 기록된 100회/초 자료에 표시된 시각의 정확성 여부					
	자료획득 및 전송방법	· TCP/IP통신가능 · 다중전송이 가능					
	기록형식 및 저장	· 100회/초, 20회/초 멀티샘플링 · 매초마다 20회/초 자료에서 MMA (최대, 최소, 평균)값 산출 및 저장					
	저장형식	· 범용, 자료구조 형식 (SEED, mini-SEED, SAC, GCF, SEGY, GSMS, CD1.1) · 다른 방식일 경우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내장 여부					

유의사항

- 1) 동적범위 : 입력단자 쇼트 시의 출력값 측정
- 2) 채널수 : 지진자료 수신용 채널수를 점검, 추가 채널이 물리적으로 즉시 가능여부 점검
- 3) 자료기록 시간 : 이벤트데이터 트리거 및 저장 여부 점검
- 4) 최대시간오차 : 검증된 타 지진파형과 측정된 지진파형의 시각오차를 상호 비교하여 결과 도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신청 내용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	전화번호	
	성능검사 범위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 지진가속도기록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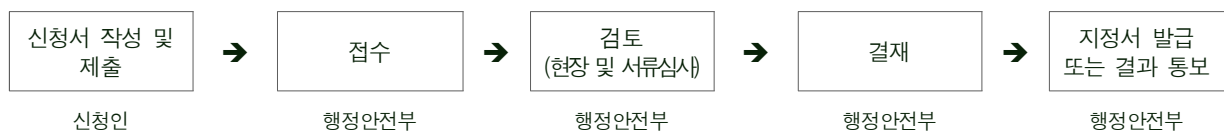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영 제5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실험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4.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전화번호:

4. 사업장 주소:

4. 검사실 주소:

5. 성능검사 범위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 지진가속도기록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지진
가속도계측기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 [] 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검사)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진 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이하 “성 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u> <u>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 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를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진가 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자 체검사결과서, 제품사양서 및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 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 정받은 자(이하 “성능검사기관”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 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한 관측 장비 검정 결과 제1 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경 우 법 제6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u> <u>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 도계측센서 또는 지진가속도기록</u>

<신 설>

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4.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 가. 성능검사 접수, 수수료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
 - 나. 성능검사 세부 시험 방법, 처

<신 설>

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성능검사서 발급,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성능검사 실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
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검사 범위
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
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
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조4제2항에

<신 설>

다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 합산금액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쉬워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따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생략)

5.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것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의 진동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상시 작동할 것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